

■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

**강서구 화곡동 401-1
역세권 청년주택
지구단위계획결정(안)**

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(안)도

범례

- 지구단위계획구역
- 지적선
- 건축한계선
- 차랑진출입불허구간

기본/상한용적률	높이
건폐율	지정/불이/권장용도

지정용도 (1)

- 공동주택(주거복합)^{주1)}
- 단, 지상1층은 비주거용도 설치
-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(단, 주거복합 제외)
-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량주택
-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, 치과병원, 요양병원
- 문화시설 중 옥외공연이 설치된 공연연습장
- 편의시설
- 공장, 창고시설,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(단, 주유소 제외)
- 장미식당

불허용도 (A)

-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, 휴게음식점, 체과점
-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및 서점

권장용도 (2)

-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, 휴게음식점, 체과점
-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및 서점

주1) 공동주택은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 제2호의 역세권 2030형근린주택에 한하며,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제외

V. 관계도서 : 생략(열람장소에 비치)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-1790호

중도매업 허가취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

강서 농산물도매시장 내 중도매업 허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중도매인에 대하여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25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허가취소 처분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18년 8월 2일
서울특별시 장

1. 처분대상

연번	상 호	허가번호	소 재 지	대표자
1	㈜녹색앤푸드	2강10048	서울특별시 강서구 발산로 40(외발산동)	신*철

- 2. 처분의 내용 : 중도매업 허가취소

- 3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
 - 3개월 연속 무실적(2018년 2,3,5월)
 - ※ 2018년 4월은 업무정지 기간으로 실적산정 기간에서 제외

- 4. 처분근거 : 「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 [별표 4]

- 5. 처 분 일 : 2018. 7. 30.

- 6. 이의제기 안내
 - 동 처분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, 당해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,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내,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내에 행정심판(행정심판법 제27조)을, 또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,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이내에 행정소송(행정소송법 제20조)을 제기할 수 있음.

- 7. 허가취소에 따른 행정절차 안내
 -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중도매인은 도매시장 내 배정받은 점포 반납, 보증금 환급 등의 절차를 거쳐 중도매업 허가취소 처리됨.
 - (허가취소 절차관련 문의 :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유통관리팀 ☎ 2640-6056)

- 8. 기타 문의처 : 도시농업과 도매시장관리팀(☎ 2133-5384)